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03

발의연월일: 2024. 10. 21.

발 의 자: 박정훈·김성원·김선교

고동진 • 이인선 • 이성권

박상웅 • 윤상현 • 박수민

구자근 • 배현진 • 남인순

의원(12인)

제안이유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인구분 포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이에 따른 공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즉 학령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는데도, 수십년 전 인구분포 기준으로 초중고교 학 생 배정을 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임.

특히 학령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멀리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학교 배정 조정과 신설학교 설립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 하는데, 현 법령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이는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위치를 결정하는 법체계가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통일되지 않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대처가 힘들기 때문임. 즉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원하는 위치와 땅을 제공하는 사람이 원하는 위치가 달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이후 인근에 중학교를 만들려고 할 때 해당 교육청이 주도해 교육수요를 파악해 학교 입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학교 입지 결정 권한이 교육청에 있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학교 이전, 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임.

주요내용

- 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이전·재배치 수요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환경 격 차를 해소하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안 제1조).
- 나.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의 수립, 내용,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마. 배치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중 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제14조 및 제15조).
- 바.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육수요를 예측하도록 하여 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 사.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토록 함(안 제17조).
- 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 이전·재배치 지원기관을 지정토록 하여, 교육감의 종합계획 및 배치계획 수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학교 이전 · 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이전·재배치 수요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이전·재배치"란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 지역 내에 기존의 학교를 이전·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 2. "개발사업"이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 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종합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학교 이전·재배치

- 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4. "배치계획"이란 교육감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배치계획의 관계) ① 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 중 학교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 ② 배치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배치계획이 종합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종합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배치계획의 내용이 종합계획에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별·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이전·재배치 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재배치 학교의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종합계획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종합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내용) 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학교 수요 및 위치에 관한 사항
 - 3. 관할 구역의 인구통계 및 인구변화에 관한 사항
 - 4. 학생 수 전망 및 학생 배치에 관한 사항
 - 5. 용지의 조성ㆍ공급 및 입지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6. 교육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 7. 세부 추진 과제 · 방법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8.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학교 이전·재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공청회의 개최)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종합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 다.
- 제10조(종합계획의 승인) ①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접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배치계획

- 제11조(배치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배치계획의 내용) ①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및 학생 수
 - 2. 학교 간 거리
 - 3. 통학 거리ㆍ시간 등 통학 여건
 - 4. 학교의 규모 및 위치
 - 5. 증축가능성 등 교육시설 여건

- 6. 지역주민의 의사
- 7. 향후 개발사업 등에 의한 인구 유입 및 유출 가능성
- 8. 그 밖에 학교 이전·재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① 교육감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배치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배치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군·구의 의회 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교육 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군·구의 의회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 시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제14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① 교육감은 수립된 배치계획에 포함된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는 수립된 개발사업계획 중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입안 제안 절차,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1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수 있는 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받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사항을 지체없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수 있는 자가 제안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제안받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제안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제16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

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될 것으로 예측되는 학생 수요, 학교용지의 위치 및모양, 학교의 개교시기 및 재원분담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사전에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학교용지의 위치, 학교의 개교시기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특례

- 제17조(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 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②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 군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 ③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및 복수용 도의 인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명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여적용할 수 있다.

제7장 지원기관 설치

- 제18조(학교 이전·재배치 지원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학교 이전·재배치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교 이전 재배치 모형 개발
 - 2. 학교 이전 · 재배치 시행방안 발굴 · 조사 · 연구
 - 3. 학교ㆍ이전 재배치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 4.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 수립 지원

- 5. 이전 · 재배치 학교의 입지 적정성에 관한 자문 지원
- 6. 학교 이전 · 재배치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 7. 그 밖에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 및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그 밖에 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